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톤밸류웨이40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채권 모투자 신탁 삭제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 (생략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1. ~ 2. (생략) <u>3.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</u> ④ (생략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④ (현행과 같음)
채권 모투자 신탁 삭제	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제15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 가. ~ 나. (생략) <u>다.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이하로 한다</u> 2. (생략)	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제15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 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2. (현행과 같음)
	<신 설>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</u>